

의안번호	제 24 호
의결연월일	1998. 10. 24

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

심사 보고서

1. 심사 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8. 10. 15 예산군수

나. 회부일자 : 1998. 10. 20

다. 상정일자 : 1998. 10. 20

제66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

2. 제안설명요지(자치행정과장 : 최봉일)

가. 개정이유

- 자치단체의 행정조직 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용함으로써 기구 정원 조정시 각종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낭비 요소가 많음.
- 또한 기구정원조례 개정시 많은 조직법규를 개정해야 하므로 조례 개정과정에서 법규운용 미숙으로 재개정의 오류를 범할 소지가 있음.

나. 주 요 골 자

- 군·본청·실·과 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분장사무 규정 (안 제2장)
- 직속기관(보건소, 지도소) 행정기구 설치와 분장사무 규정 (안 제3장)
- 사업소 행정기구 설치와 분장사무 규정 (안 제4장)
- 읍·면의 직무 읍·면장 관할구역을 규정 (안 제5장)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: 이원용)

-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기구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행정낭비 및 의회의 조례 심의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델안을 제시한 바에 의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·답변요지

- 생략

5. 토론요지

- 없음

6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